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323

제안연월일 : 2024. 8.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협약 기간 만료일(2024.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
-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

○ 추진 필요성

- 우수한 지적 자원을 보유한 전문 교육기관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대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도모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사무내용 및 범위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창캠퍼스

○ 규모: 지상 2층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360동 205호

○ 지원시설 : 분원 사무실, 강의실(GBST-100동, 360동, 500동), 화장실, 주차장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재계약 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최초 공개모집 후 재계약

- 재계약 절차 준용 : 재계약 적정성 검토(자체 성과평가 실시) → 재계약 계획 수립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의회동의안 상정·승인 → 재계약 체결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매년 300,000천원 내외

구 분	2022년 (1・2학기)	2023년 (1・2학기)	2024년 (1・2학기)	비고
집행실적	306,953천원	235,089천원	268,500천원	강의료, 운영비, 경비 등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군민들의 평생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성 요구로 위탁 필요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전문성을 갖춘 서울대학교 위탁을 통해 군민의 학습 욕구 실현 및 전문 지식 자원 공유를 통한 관심 분야 역량 강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 전문성이 갖춰진 서울대학교를 활용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단기인력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민간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전문인력 보유, 체계적 프로그램, 차별화된 수행역량 활용
-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에 반영
- 수강자 설문조사·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성과관리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검증된 학교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수탁기관 포함)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결과(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성과지표 기준) 성과평가 점수 91점으로 재계약 적정함

○ 평창군은 군민에 대한 학습복지를 실현하고, 서울대는 지역사회에 전문지식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학습역량 강화 및 평창군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차.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추진현황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재계약 적정성(자체성과평가) 보고 : 2024. 7. 10.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수립 : 2024. 8. 5.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위원 6명) : 2024. 8. 7.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수탁기관 재계약 원안 가결) : 2024. 8. 14.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재계약 의회동의안 제출 : 2024. 8.

○ 관련자료

- 협약서(안) 1부

관계자료 첨부

□ 협약서(안)

HAPPY700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운영
협 약 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평창군수(이하 '위탁자'라 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수탁자'라 함)에 위탁하는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위탁업무 내용) 이 협약에 의한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 위탁 업무의 자세한 사항은 위탁운영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2025년 1월 1일 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의로써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조의 '위탁운영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당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소요경비 지급) ①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탁소요경비의 비목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수탁자의 직접 인건비
2. 사업추진 경비
3. 일반관리비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조에서 정한 협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비에 대하여 협약체결 후 2회 분할지급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괄지급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요경비의 지급시기, 금액 등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소요경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탁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지급받은 소요경비를 관리하고, 협약된 업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보고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 후 차기년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결과에는 소요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정산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위탁사업금액 중 사업추진 경비는 정산하며,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남은 사업비(발생이자 포함)는 위탁자에게 반납한다.

제8조(보안조치)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가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소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협약의 해지시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탁자는 제3자에게 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권) ① 위탁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속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의 업무 위탁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3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추진현황,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협약의 효력) 이 공문에 의한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위와 같이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고 본 협약이 성립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월 1일

평 창 군	서울대 평생교육원
군 수 심 재 국	원 장 0 0 0

관계법령 발췌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 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획)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 시킬 수 있다.

□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7.27.〉